

제2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일 반 의 안

(7 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부서명	페이지
2026-102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략담당관	1
2026-103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교육과	11
2026-104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과	20
2026-10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과	28
2026-106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과	37
2026-107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과	45
2026-108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미래농업과	51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12.31. 만료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 인력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다. 위탁사무

- 1)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농업인력 근태 및 인력 배치 관리
- 2) 농업인력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3)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사업
- 5)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2026년 예산 : 150백만원)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바.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150백만원(2026년 기준),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변동>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및 운영방향

- 1)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 예산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근로자 이송 차량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체계 구축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을 활용해 농작업 적기에 인력 알선
- 2) 전문 운영기관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 농가와 근로자 간 상시 상담 및 현장 대응 강화
 - 인력 관리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 3) 신규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현장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작업 적응력 및 안전의식 향상
-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험지원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나. 관계법령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5조, 6조, 7조, 8조, 17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4조
-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제12조, 13조

다. 향후계획

- 1)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6. 9.
-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6. 10. ~ 11.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2.
- 4)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2027.1.1.부터 3년간

라.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I**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13조

II**위탁개요**

- 시 설 명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3년간
- 사 업 비 : 2026년 기준 150백만원(국 45, 도 13.5, 군 91.5)
- 수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 사업
 -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주요내용
 -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보증을 위한 공증 시행
 - 위탁사업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 사업 추진 결과 및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및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일정

내용	민간위탁계획 및 적정성 검토	군의회 동의안제출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시기	2026. 8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11월	2026. 12월

III

운영방안

구 분	내 용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	• 농가 권역별 차량운행 노선을 설정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시스템 마련
농번기 인력수급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일손 공급 • 수확, 제초 등 단순작업이 가능한 농작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매칭
농작업 교육	• 현장실습교육이 가능한 농가를 지정 후 공공형 계절근로자까지 교육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시행
안전관리	• 농작업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안전용품 지원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운영관리	• 농업인력 수급현황 관리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지원

⇒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공공형 계절근로 통합 관리

IV

운영실적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위탁기관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이사장 변동규
-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3년 설립)

합계(명)	농가	농작업자	현물출자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455	184	264	5	1	1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2026.12.31. 수탁기간 만료 예정**

※ 2014 ~ 2026년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 운영실적 현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농작업 알선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 출퇴근 수송차량 운행

연도	농작업 알선실적 참여인원(명)			출퇴근 차량운행						사업비 (백만원)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2014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	-	91
2015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	-	107
2016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121
2017	11,013	9,822	1,191	305	3,491	284	2,840	21	651	141
2018	10,128	9,358	770	240	2,700	225	2,250	15	450	150
2019	10,968	10,206	762	205	2,232	191	1,910	14	322	150
2020	10,540	9,870	670	172	1,930	158	1,580	14	350	150
2021	10,035	10,035	-	178	1,780	178	1,780	-	-	150
2022	10,593	10,013	580	215	2,280	170	1,700	45	580	150
2023	10,320	9,980	340	217	2,270	193	1,930	24	340	150
2024	10,388	10,388	-	714	5,908	225	2,250	489	3,658	150
2025	10,540	10,540	-	1,077	9,637	245	2,450	832	7,187	150
2026. 6.	7,530	7,530	-	620	5,638	129	1,290	491	4,348	150

○ 사무실 전경



건물전경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실

V

양우계익

- 2026. 8.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95회 정례회 중)
- 2026. 9. :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10. ~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VI

기대효과

-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적기 공급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전문 운영기관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농가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농업고용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위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위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 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1) 시 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2) 위 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3)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근무인원	9명	5명	3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3층 직원숙소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구분	위탁사무 및 조건	비고
거창월성 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거창월성 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 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지원(시설운영,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징수

라. 수탁자 자격사항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나. 향후계획

- 2026. 9. : 제295회 정례회 의안 상정
- 2026. 10. : 공개모집 공고
- 2026. 11.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교사,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9명 등)
- 2026. 12. : 수탁자 선정 발표
- 2026. 12.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수련원, 과학관, 캠핑장)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위탁 계획입니다.

I 위탁현황

1 위탁개요

- 시설명 :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치 :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수탁자 : (사)거창홍사단

2 시설현황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전시실	
		옥상	천체관측관

3 지원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월성청소년수련원	-	-	-	2023년 정상화 이후로 지원금 없음
월성우주창의과학관	282,000	290,000	294,000	운영비 지원
	51,871	43,972	24,238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7,707	8,551	-	사용료 징수 (매년 12월 징수)

II 위탁 추진 계획

1 추진방향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단체 공개모집
- 수탁단체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단체 선정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위탁조건

구 분	위탁조건	비 고
거창월성 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거창월성 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 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지원(시설운영,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징수

○ 수탁자 자격사항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비 고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실적 필요	

< 청소년단체 >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 출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동 시행령 제2조,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3] 적격자 선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및 선정 : 6 ~ 9명(관련 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기준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 기관의 운영기반 • 사업수행 실적	
시설에 대한 이해	• 수탁의 목적과 취지 • 중장기 발전 전략	
시설운영계획	•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 지역협력계획	

- 선정결과 :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서면으로 개별통보

4] 향후계획

- 의회동의 : 2026. 9. 9. 까지
- 공개모집 : 2026. 9. 14. ~ 10. 02.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2026. 10. 6. ~ 10. 12.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 2026. 10. 13. ~ 10. 23.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26.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무형유산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 및 군민 대상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필요한 거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나. 위 치 : 거창읍 수남로 2193-34

다. 주요시설

구분	전수교육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문화집회시설 (창고)	야외공연장
	지하 1	지상 1					
1,224.47㎡	141.6㎡	679.5㎡	57.6㎡	40.5㎡	32.4㎡	173.16㎡	119.71㎡

라. 위탁대상 사무

- 1)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
- 2) 무형유산의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3) 전수교육관 시설물 및 비품관리 위탁, 사용료 관리
-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위탁기간 : 2026. 12. 19. ~ 2029. 12. 18.(3년)

바. 위탁방법 :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류 및 면접 심사)

아. 소요예산 : 금163,580천원(2026년 기준) / 연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5)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나. 향후계획

- 1) 2026. 9. : 모집공고 및 접수
- 2) 2026. 9. ~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3) 2026. 11.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다. 위탁운영 계획 : 붙임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계획

- ❖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 만료(2026. 12. 18.)에 따라 거창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I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II 위탁시설현황

- 시설명 :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개관 2011년)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93-34
- 주요시설

합계	전수교육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문화집회시설 (창고)	야외공연장
	지하 1	지상 1					
1,224.47㎡	141.6㎡	679.5㎡	57.6㎡	40.5㎡	32.4㎡	173.16㎡	119.71㎡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6. 12. 19. ~ 2029. 12. 18.(3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류 및 면접 심사)

○ 연간 지원 예산('26년 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비고
민간위탁금	163,580	123,387	40,193	

※ 인건비, 관리비 등 변동이 있을 시 증감 가능함.

○ 신청자격

-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관내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위탁대상 사무범위

-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
- 무형유산의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교육관 시설물 및 비품관리 위탁, 사용료 관리
-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선정

IV 향후 추진계획

○ 모집공고 : 2026. 9월 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 9. ~ 10.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6. 11월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계약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
- 나.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면적: 1,855㎡(3층 철골) ▶ 용량: 30톤/일 ▶ 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2,639 (26년 위탁비)	(공동수급) (주)넥스트워터 55% 금강엔지니어링 45%	관리인원 19명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등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단, 거창군 신설 소각시설(스토커형) 준공 시 까지

- 3)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위원회 평가·선정)
- 4) 수탁자격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법인)
 - 수탁자의 기술 능력, 재정 상태, 적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선정

다. 소요예산 : 2,782백만원 정도 (2026년도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 1,451백만원 / 변동비 : 702백만원 / 제경비 : 629백만원

3. 동의(승인)사항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가. 관련근거

-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동의(승인)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함

4. 향후 추진일정

- 가. 2026. 08.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나. 2026. 09. : 민간위탁 수행자 모집 공고
- 다. 2026. 10.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자 선정위원회 구성
- 라. 2026. 11. :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협상대상자 결정
- 마. 20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인수인계
- 바. 2027. 01. : 위탁업무 개시

5. 참고사항 : 붙임

가. 거창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나. 관계 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 공백 방지 및 지속성 확보 필요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증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24시간 안정적인 소각시설 가동과 철저한 환경오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업무의 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II. 현 황

□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위치	규모	위탁관리비	현 운영업체	비고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면적: 1,855㎡(3층, 철골) ▶ 용량: 30톤/일 ▶ 방식: 열분해가스화방식	2,639 (26년 위탁비)	(공동수급) (주)넥스트위터 55% 금강엔지니어링 45%	관리인원 19명

□ 위탁현황

- 위 탁 자 : (주)넥스트위터 55%, 금강엔지니어링(주) 45%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운영인력 : 19명(관리직 7명, 현장 12명 <4교대×3명>)
- 위 탁 비 : 2,639백만원 (2026년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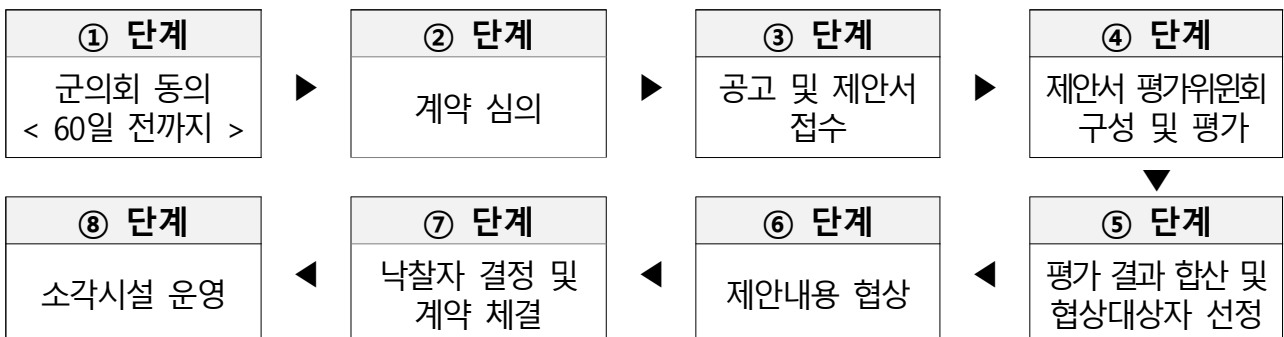
III 위탁 개요

- 위탁시설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단, 거창군 소각시설(스토커형) 개선사업 완료 전까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평가·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자격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가스화 방식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수탁자의 기술 능력 및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소요예산 : 2,782백만원 정도 (2026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
- 고정비 : 1,451백만원 / 변동비 : 702백만원 / 제경비 : 629백만원

※ 연도별 위탁관리비 현황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165,222	2,443,237	2,638,651	2,782,386
고정비 (관리비)	1,111,888	1,289,021	1,357,476	1,450,825
변동비 (시설운영)	686,739	714,658	683,929	702,468
제경비	366,595	439,558	597,246	629,093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026. 8.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6. 9. : 민간위탁 수행자 선정 공고
- 2026. 10. : 신청서 접수 및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구성
- 2026. 11.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개최 및 협상대상자 결정
- 2026. 12.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인수인계
- 2027. 01. : 위탁업무 개시

IV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의회) : 2026. 9월 중

- 내 용 : 위탁의 필요성, 위탁자 선정 방법, 추진 일정 등

○ 모집공고 및 접수(예정)

-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0.(20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01. ~ 10. 10.(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시설, 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 최근 5년 이내 20톤/일 이상의 열분해 방식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법인)
- 위탁사무 :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침출수 처리시설 포함)

○ 위탁 운영자 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 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0. 30. (금) 14:00 ~ (예정)
- 장 소 : 군청 중회의실
- 심 의 위 원 : 위탁 운영자 선정위원회 위원
- 심 의 방 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평가기준(안) : 정량 30점, 정성 50점, 가격 20점

평 가 부 문		점 수		평 가 자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80점	30점	사업담당 평가	
	정성적 평가		50점	위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		20점		계약담당 평가	
합계		100점		70점 이상 협상 가능	

- 선정방법

-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평가 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 평가 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 업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
(단,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단독 입찰(2인 미만 신청) 시 :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위탁계약 체결 : 2026. 12월 중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종사자 고용 유지 <과업지시서 수록>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5. 10. 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25. 10.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8. 12. 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 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6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에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6-6번지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 사업장 지내)

다. 위탁사무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시설 운영·관리

-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 운영
- 다회용기 세척물품 및 차량 운영
- 다회용기 및 운영물품 운영

- 다회용기 대여 및 회수, 세척, 공급 운영 등

라. 재위탁기간 : 3년(2027. 1. 1. ~ 2029. 12. 31.)

- 1차계약 : 2024. 1. 1. ~ 2026. 12. 31

마. 위탁사업자 : 경남 거창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말순)

→ 자활근로사업 에코워싱사업단 연계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

바. 소요예산 : 없음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 등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기존에 일부 세척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집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코워싱사업)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자활근로 활성화뿐만 아니라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나. 관계법규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
-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0조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 「자활사업안내(Ⅰ)」 지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그간 추진현황

- 2023. 3. : 거창군↔거창지역자활센터↔장례식장 업무협약 체결
- 2023. 10. : 세척시설 및 다회용기 등 시설 확충 완료
- 2024. 1. ~ : 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 전면 시행 중
- 2024. 6. ~ : 거창 공유컵 ‘또쓰’ 세척사업 시행

라. 향후계획

- 2026. 10.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6. 12. : 위수탁 협약 체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거창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

제10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군민 실천사업 및 민·관협력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자활사업 안내(Ⅰ) 지침】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중인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 수행중인 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함

- 시장진입성, 자활기업 창업 전망, 수익금발생, 참여자의 자립유도 가능성 등을 검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전 까지 민간위탁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 이라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붙임2

위탁 운영 물품

취득 재산명	물품 사진	규격 및 모델명	수량 (대)	취득일자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508, 자외선+플라즈마이온소독/컵, 1500×600×1900mm	1	2023-07-10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0018S, 열풍소독, 1800×750×1950mm	1	2023-07-10
주방기구 소독기		선경산업, SK-N0015S, 열풍소독, 1500×750×1950mm	1	2023-07-10
상업용 식기세척기		한소닉, HDF-1002GD, 2탱크/건조형/가스식, 5850×930×1900mm	1	2023-07-10
상업용 식기세척기		한소닉, HDF-E, (부품)에너지세이빙장치, 1000×750×600mm	2	2023-07-10
냉난방기		삼성전자, AP230RSPDHI-H1, 냉방23/난방26kW, 직립형	1	2023-07-28
냉난방기		삼성전자, AP072CSPFBH1PP, 냉방7.2/난방8.5kW, 직립형	1	2023-07-28

취득 재산명	물품 사진	규격 및 모델명	수량 (대)	취득일자
냉난방기		삼성전자, (TH)AR07T9191HZ, 냉방2.7/난방3.2kW, 벽걸이형	1	2023-07-28
상업용 식기세척기		상업용식기세척기, 자숨, TR-1800S, 1800×870×850mm	1	2023-09-13
살균수 제조장치		수처리 제조장치, 워터포인트, WATER FALL, 1000L/hr (800×960×1600),필터류포함	1	2023-09-13
다회용기 (식기세트)		밥·국그릇, 접시(大, 小), 소스용 접시, 수저	33,376	2023-08-25 2026-03-17
수거·운반 차량		전기화물트럭, 기아, 봉고III EV 1톤 킹캡 초장축 2WD GL 미단이탑차 플러스형 2023년, 적재용량1000kg	1	2023-09-27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0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주차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업 :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나. 위탁사무
- 1)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차장명	소재지	주차면수	면적(㎡)
소계	2개소	86면	2,481
노상공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일원	36면	528
거점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	50면	1,953

- 2) 유료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 다. 위탁기간 : 2026. 11. ~ 2029. 11.
-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입찰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전통시장·식당·병원 등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 2) 장기주차 관리·예방을 통한 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률 증가 목적

나. 관련법령

1)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8월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9월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6. 10월

4)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1월

5) 공영주차장 운영 : 2026. 11월 ~ 2029. 11월

라. 관리수탁 수입액(예상) : 연 36,000천원 정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1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시설개요

- 시설현황

주차장명	소재지	주차면수	면적(m ²)
소계	2개소	86면	2,481
노상공영주차장	북부사거리 ~ 중앙교 일원	36면	528
거점공영주차장	거창읍 대동리 780-3 번지	50면	1,953

- 위탁기간 : 2026. 11. ~ 2029. 11. / 3년간
- 추진방법 : 공개입찰
- 관리수탁금액 : 연 36,000천원 정도
- 위탁자격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갖추고 거창군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09:00 ~ 18:00
- 주차요금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 주차요금 경감 또는 면제사항 준수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8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9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6. 10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1월
- 민간위탁 운영 : 2026. 11월 ~ 2029. 11월

4 기대효과

- (운영효율 제고) 전통시장·식당·병원 등 밀집지역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
- (민간효과) 장기주차 관리·예방을 통한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비용절감) 민간위탁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높고 관리용이

위치도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의안 번호	2026-10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공모이유

- 가. 발전 잠재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 나.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2. 공모개요

- 가. 사 업 명 :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나. 사업기간 : 2027. 1. ~ 12.
- 다.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40, 군비 160, 자부담 200)
- 라. 사업위치 : 거창군 가조면 장거리 126-2
- 마. 신청업체 : 농업회사법인 (주)거창한국수 (대표 김상희)
- 바. 사업내용 : 생면제면, 자동포장, 농산물가공 기계·장비 설치

3. 추진계획

- 가. 2026. 7. 29.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제출(거창군 → 경남도)
- 나. 2026. 8. : 사업계획 서류·발표심사 및 현장확인(경남도)
- 다. 2026. 12.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경남도)
- 라. 2027. 1.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4. 기대효과

- 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붙임1

위치도 및 평면도

